

〈특별호〉

납부·환급에 대한 기대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직업, 성별과 조절초점의 차이*

안 서 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추가 납부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납부나 환급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납부 상황을 평가하는 준거점이 달라지면서 납세순응도가 달라지는지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의 영향이 납세방법이 다른 직업(근로소득자 vs. 자영업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와 성별과 조절초점과 같은 개인차 변인이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추가 납부 상황을 제시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조건별로 기대 유무와 기대 내용을 달리하여 응답자들의 납세순응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대가 없는 경우 납부보다 환급 상황에서 납세순응도가 높게 나타나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원천징수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나 기대가 있는 경우 환급보다 납부 상황에서 납세순응도가 높게 나타나 기대 자산이 준거점으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기대의 유무나 내용이 납세순응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조절초점의 개인차 변인을 넣어 직업별로 분석한 경우 근로소득자에게는 향상초점이, 자영업자에게는 예방초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자영업자의 경우 성별과 조절초점의 상호작용이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의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납세순응도, 기대, 준거점, 조절초점

* 본 연구는 한국심리학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후원을 받은 “납세자의 심리적 가치에 대한 실험적 분석” 연구의 일환이었음을 알려드리며, 2012년 8월 23일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대외심포지움 “조세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양 기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교신저자: 안서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139-743)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Tel: 02-970-6484, E-mail: sahn@seoultech.ac.kr

세금은 국가 재원의 중요한 원천이며 자신의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고 결정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주요 의무 중 하나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세연구원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 의하면(박명호, 전병렬, 조명환, 2011) 2009년도 법인은 조사 대상 법인 중 11.7%, 개인사업자의 경우 33.7%가 소득탈루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소득을 모두 정확히 보고하지 않고 누락시켜 납세액을 줄인 것이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소득의 일부를 누락시켜 납세액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당연한 행동이다(Allingham & Sandmon, 1972). 세금의 액수가 많아질수록 자신이 실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능한 소득을 적게 보고하고 납세액을 줄이고자 한다. 세무조사에 걸려 탈루 사실이 드러나면 벌금까지 물게 되지만 세무조사에 걸릴 확률이 낮거나 벌금이 그리 크지 않다고 지각한다면 소득 탈루를 통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의 기대효용은 높아지게 된다.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이 납세를 성실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납세와 관련하여 납세순응도(tax compliance)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납세자를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로 보고 탈세의 적발 가능성과 가산세율을 고려하여 자신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탈세 또는 납세 선택을 한다고 본다(Allingham & Sandmo, 1972). 그러나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의 연구 결과들은 인간을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로 보는 데 이의를 제기한다. Simon(1956)의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개념에 기초하여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이 정보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고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 자체도 모든 가용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대신 인간을 정보처리자로 보면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인지적 특

성들이 반영된 경제적 의사결정을 소개한다. 이렇듯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의 연구 결과들은 납세자를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로 보고 탈세의 적발 가능성과 가산세율을 주로 고려하여 납세 결정을 하는 기존의 모형이 현실의 납세자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정보처리 특성을 납세 상황에 적용하여 납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지적 요인을 제시하고 이러한 요인이 가상적인 납세 상황에서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적 방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납세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인지적 특성으로는 무엇을 기준(준거점, reference point)으로 납부 상황을 이해하면서 납세 상황을 어떤 틀로 구성(framing)하는지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납세 전에 납세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프로스펙트 이론(prospect theory)에 기초하면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 결과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은 경제학의 기대효용이론에서 제안하듯이 최종 자산상태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준거점(reference point)으로 보고 자산의 변화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진다(Kahneman & Tversky, 1979). 즉 평가하고자 하는 결과가 이득을 가져오는지 손실을 가져오는지 먼저 파악하고(framing) 그 후에 구체적으로 객관적 가치를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5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50만원의 납부가 독립적으로 평가되기보다 사전에 얼마를 낼 것을 기대했는지가 50만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80만원을 낼 것을 기대하다가 50만원을 내게 되면 납부 상황이 이득으로 지각이 되면서 납세순응이 높아질 수 있지만 20만원을 낼 것을 기대하다가 50만원을 내게 되면 20만원이 기준이 되어 50만원이 평가가 되고 납세 상황이 손실로 지각되면서 납세순응도가 낮아질 수 있다. 동일하게 50만원을 내더라도 사전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 준거점이 달라지고 상황을 손실 또는 이득으로

지각하게 된다. 따라서 납세자가 환급을 기대하는 경우에는 상황을 이득으로 지각하고 위험에 대해 회피적이 되면서 납세순응도가 높아진다. 반면 추가 납부를 기대하는 경우에는 상황을 손실로 지각하고 위험 추구적으로 되면서 탈세의 가능성이 커지고 납세순응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추가 납부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납부나 환급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납부 상황을 평가하는 준거점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상황을 손실이나 이득으로 지각하면서 납세순응도가 달라지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의 영향이 납세방법이 다른 직업(근로소득자 vs. 자영업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와 납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차 변인으로 성별과 조절초점(regulatory focus)을 측정하여 이들이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납세순응도에 대한 경제학 연구

Allingham과 Sandmo(1972)는 경제학적 입장에서 처음으로 탈세(tax evasion)에 대한 수리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세금신고(tax declaration)를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 문제로 보았다. 납세자는 납세 상황에 직면하여 두 개의 선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수입을 다 보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입의 일부만 보고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수입의 일부만 보고한다고 해서 항상 별금을 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조사에 걸려 조사를 받게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적게 보고하고도 조사에 걸리지 않아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고, 세무조사에 걸려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별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세무조사에 걸릴 확률이 낮고 가산세가 그리 크지 않다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수입을 적게 보고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자신에게 이득을 가져오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납부 상황에 직면하여 자신의 소득을

있는 그대로 보고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 보고하고 세금을 적게 내어 조사에 걸릴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세금을 징수하는 정부는 세무조사비율과 가산세율을 올리거나 내림으로써 납세자의 탈세 정도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후 경제학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이들의 모델에 기초하여 탈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변인을 넣어 모형을 확장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Sandmo(1981)은 납세자들의 노동공급이 달라질 때 세율, 세무조사 확률, 가산세율이 탈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고, Alm(1988)은 세금정책의 불확실성을 과세표준(tax base)과 세율(tax rate)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불확실성이 납세자의 탈세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정찬웅(1996)은 실험적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납세자의 소득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세무조사확률, 초과누진세율, 초과누진세율 적용 분기점, 별금률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참가자를 위험중립형과 위험회피형으로 구분하여 앞서 말한 변인들이 신고소득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는데, 위험회피형으로 보았을 때 변인들의 영향이 유효하게 나타났다. 납세자를 위험회피자로 본다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별금률과 누진세율을 증가하는 것이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철과 이남우(2003) 역시 실험연구를 통해 소득원천(증여소득 vs. 직무소득)과 세율변화(20% vs. 40%)에 따라 납세순응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는데, 직무소득의 경우에만 세율이 높아지면 납세순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진권, 박창균, 및 강병민(2002)도 실험을 통해 세율(조세제도), 가산세율과 세무조사비율(처벌 위주의 정책)에 더하여 징수된 세금이 공공재를 위하여 사용된다는 인식제고와 납세교육을 통한 조세윤리를

강조하는 것(교육 및 홍보위주 정책)이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에서처럼 세율이 높아지면 납세순응도는 낮아지지만 가산세율과 세무조사비율이 높아지면 납세순응도는 높아진다. 세금으로 공공재를 제공한다는 정보를 주는 경우 오히려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납세순응도가 낮아지고, 교육효과는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호 등(2011)은 이론모형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세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납세순응을 높이는 것을 증명하였고, 실험적 접근으로는 세율구조(단일세율, 누진세율)와 세율결정방식(다수결에 의한 방식, 독재자의 선호)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민주적으로 세율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 세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비금전적 요인이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납세순응 관련 연구들이 대개 경제학자나 회계학자에 의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실험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제공하는 TCMP(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 자료를 사용하여 납세순응행위를 실증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실제 납세와 관련된 자료를 실증연구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현진권 등, 2002). 그 결과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납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실험 연구법이 자주 쓰인 것으로 보인다.

납세순응도에 대한 심리학 연구: 프로스펙트 이론의 적용

프로스펙트 이론을 적용하여 납세행동을 설명한 첫 시도는 Chang, Nichols, & Schultz(1987)에

의해 이루어졌다. 기대효용이론의 효용함수는 절대 영점에서 시작하여 최종자산에 대하여 효용이 결정된다. 그리고 한계효용이 체감하므로 효용함수는 감소함수의 모양을 갖고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 회피적이 된다. 반면 프로스펙트 이론에서는 절대 영점이 기준이 아니라 준거점이 먼저 형성되는데, 준거점은 대개 현재 자산상태가 된다. 준거점을 기준으로 현재 고려하는 납부 상황이 납세자에게 이득으로 지각되는지 손실로 지각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이득의 영역에서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위험 회피적인 태도를 갖고, 반면 손실의 영역에서는 위험 추구적인 태도를 갖는다. 즉 납세 상황을 줄어든 소득으로 지각하는 경우와 손실로 지각하는 경우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서 납세순응도가 달라질 수 있다.

Chang 등(1987)은 납세 경험이 있는 MBA학생 56명을 대상으로 6개의 납세 결정(tax lottery)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납세를 하지 않아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돈의 액수를 \$100와 \$1,000로 조작하였고, 세무조사 비율은 10, 50, 90%로 조작하였다. 그리고 비율에 따라 가산세를 900, 100, 11%로 산정하여 정직하게 납세를 할 때 내는 돈의 금액(또는 납세를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돈의 금액)과 납세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에 걸렸을 때 벌금으로 내는 기대 금액이 동일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참가자 전체 데이터를 보았을 때는 납세를 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는 대안을 선택한 참가자들이 평균 39.6%로 절반에 미치지 못해 주로 위험회피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상황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따라 전체 참가자를 두 집단으로 구분을 하면,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즉 납세를 확실한 손실로 보는 사람들은 위험추구적인 선택을 더 많이 하는 반면(64.8%), 납세를 줄어든 소득으로 보는 경우 위험 회피적인 선택을 했다(18.3%).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납세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이득 vs. 손실)가 납세순응에 영향

을 미침을 잘 보여준다.

한편 TCMP 자료로 납세자의 납세행동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연구들에서 ‘원천징수 현상(withholding phenomenon)’이 보고되었다(Coltfelter, 1983; Chang & Schultz, 1990). 이는 원천징수가 적게 되어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납세자들이 원천징수가 많이 되어 환급을 받을 예정인 납세자들보다 납세순응 정도가 낮은 현상을 가리킨다. Schepanski와 Shearer(1995)는 프로스펙트 이론으로 원천징수 현상을 설명하였는데, 원천징수가 많이 되어 환급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득의 영역에 있으므로 위험 회피적인 태도를 가지는 반면 원천징수가 적게 되어 추가납부를 기대하는 사람은 손실의 영역에 있으므로 위험 추구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그 결과 납부를 해야 하는 사람이 환급을 받을 사람보다 납세순응도가 낮아지게 된다. Schepanski와 Shearer(1995)는 원천징수가 많이 되거나 적게 되어 사람들이 추가납부나 환급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경우 이러한 기대가 준거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준거점은 현재 자산(current asset position)이나 기대 자산(expected asset position)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자산이 준거점이 되는 경우 추가납부나 환급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추가납부는 손실로, 환급은 이득으로 지각된다. 그러나 추가납부나 환급에 대한 기대가 있고 이러한 기대가 준거점에 반영되는 경우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납부를 해야 하거나 기대한 것보다 환급을 적게 받는 경우는 손실로 지각되지만 기대한 것보다 더 적게 납부를 해야 하거나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환급을 받는 경우 이득으로 지각될 수 있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기대 자산보다 현재 자산이 준거점으로 사용되며 그 결과 기대 여부와 관련 없이 원천징수 현상이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연구 이후 Kirchler와 Maciejovsky(2001)는 직업에 따라 준거점과 납부 상황의 차이가 달라지는지를 연구하였다. 대개 직업에 따라 납세 방식이 달라지는는데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

로 이들의 연구가 이루어진 오스트리아에서도 근로소득자는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신고되는 소득에 개인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 반면 자영업자(the self-employed)나 사업가(business entrepreneurs)들은 자신이 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소득 신고에 개인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경우 의사나 변호사, 심리학자와 같은 자영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를 선택해 세금신고를 할 수 있지만 사업자의 경우 보다 엄격한 회계 절차에 기초하여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Kirchler와 Maciejovsky(2001)는 직업에 따라 납세 방법이 달라지고 평소 개인에게 익숙한 납세 방법에 따라 개인의 준거점 형성이나 납세를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와 사업자를 비교하였는데, 보다 제약이 적은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자영업자는 단기 관점에서 납세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주로 현재 자산에 기초해 납세 상황을 평가하는 반면, 보다 엄격한 회계 절차를 거쳐 세금신고를 하는 사업가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납세를 보고 기대 자산에 기초해 납세 상황을 평가한다고 보았다. 실제 자영업자와 사업자를 실험 참가자로 참가시켜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납세순응도를 측정한 결과 자영업자는 현재 자산을 준거점으로 삼는 반면, 사업자는 기대 자산을 준거점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Copeland와 Cuccia(2002)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기대를 실험적으로 조작한 점을 지적하며 실험적으로 조작된 기대가 아닌 참가자의 이전 납부 경험에 기초하여 기대가 형성된 경우 현재 자산과 기대 자산 중 어떤 것이 준거점으로 작용하여 납세 상황이 지각되는지 연구하였다. 이들 연구 결과는 기대 자산과 현재 자산이 모두 준거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각 참가자가 자신의 납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기대를 형성하는 경우 기대 자산이 영향을 미치지만 기대 자산에 적응(adaptation)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게 되면 기대 자산에 적응해

현재 자산이 준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Schepanski와 Shearer(1995)의 연구 이후 기대 자산 또는 현재 자산을 준거점으로 사용하는지가 여러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었다. Schepanski와 Shearer(1995)는 현재 자산이 준거점으로 사용됨을 보여주었지만 이후 연구들은 기대 자산 또한 준거점으로 사용됨을 보여주고 있다.

납세순응도와 개인차

심리학에서 이루어진 납세순응도와 관련된 연구의 또 다른 주제는 개인차에 대한 것이다. 먼저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으로 성차에 대한 연구가 있다. 주로 여성의 남성보다 순응도가 높다는 것인데(Baldry, 1987; Lewis, Carrera, Cullis, & Jones, 2009) 결과가 항상 일관적이지는 않아서 Kirchler와 Maciejovsky(2001)는 남성이 여성보다 순응도가 높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Hasseldine과 Hite(2003)는 목표 틀 효과(goal framing effect)와 성별과의 상호작용을 발견하였는데, 여성은 부정적 틀로 제시된 메시지보다 긍정적 틀로 제시된 메시지에 설득이 잘 되어 납세순응도가 높아지는 반면 남성은 부정적 틀이 보다 효과적이었다.

세금에 대한 지식도 세금에 대한 태도나 납세행동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으로 연구되었다. 일반적으로 세금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세금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납세순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ong & Yarbrough, 1978; Eriksen & Fallon, 1996). 한편 Lewis 등(2009)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주고 납세순응도를 조사하였는데, 심리학 전공 학생들과 경제학 전공 학생들을 비교하였을 때 경제학 전공 학생들이 납세순응도가 낮고 세무조사 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따라 순응도가 높아지는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들은 문화 차이도 함께 조사하였는데, 이탈리아와 영

국 사람들을 비교한 결과 두 나라의 납세 제도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사람들에게서 전반적으로 납세순응도가 낮게 나타나고 세무조사 비율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결과를 평가하는 사고방식과 문화의 영향이 세금 관련된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최근 사회심리학이나 판단과 의사결정의 심리학 분야에서 연구가 많이 되는 개인차 변인으로 조절초점(self-regulatory focus)이 있다. 조절초점은 개인을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동기화시키고 관련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개인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Higgins, 1997, 1998). 조절초점은 크게 향상(promotion)과 예방(prevention) 초점으로 구분되는데, 향상 초점에서는 개인의 이상이나 소망하는 바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지는 반면 예방 초점에서는 개인의 의무나 임무를 완수하거나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안전 지향적으로 움직이도록 한다. 이러한 조절초점은 개인의 기질이나 상황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절초점은 목표를 설정하거나 유지, 성취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즉 사람들의 조절초점이 메시지의 목표 틀과 일치하면, 설득 메시지는 더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조절초점과 정보의 틀과의 일치성은 조절 적합성(regulatory fit)이라고 지칭되는데, 향상초점에 있는 사람에게는 긍정적 틀로 제시된 메시지가 보다 효과적인 반면 예방초점에 있는 사람에게는 부정적 틀로 제시된 메시지가 보다 효과적이다. 실제로 Holler, Hoelzl, Kirchler, Leder, & Mannetti(2008)는 납세순응도를 높이고자 제시된 메시지의 틀이 메시지 수용자의 조절초점과 적합할 때 메시지의 영향력이 보다 크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납세순응과 틀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반면 조절초점과의 연구는 아직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납세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납세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조

절초점이 이러한 상황지각에 개인차 변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절초점을 측정하여 조절초점에 따라 납세순응도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납세 관련 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추가 납부상황에 직면해서 어떤 기대(환급 vs. 납부)를 가지고 있느냐와 기대 유무에 따라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어떤 준거점(현재 자산 vs. 기대 자산)이 사용되는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하였다(연구방법의 '결과 예측과 분석 방법' 참조). 서구에서 이루어진 준거점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결과들이 일관되게 나오지 않았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이루어지는 연구이므로 특정 결과에 대한 가설을 세우지 않고 우리나라 납세자 행동을 탐색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납세행동에 납세자의 직업, 성별과 조절초점이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았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인터넷 조사회사에 패널로 등록되어 있는 성인 400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실험 첫 단계에서 직업을 물었고 근로소득자이거나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실험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었다. 근로소득자 200명, 자영업자 200명이 참여하였고 8개 실험 조건에 50명씩 무선팩으로 할당되었다. 근로소득자는 남자 102명(51%), 여자 98명(49%)이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38.78세 ($SD=10.12$, 20~59세)이었다. 자영업자는 남자 140명(70%), 여자 60명(30%)이었고 평균 연령 40.28세($SD=7.09$, 23~59세)이었다. 참가자 전체로 보면, 남자 242명(60.5%), 여자 158명(39.5%)이었고 평균 연령은 39.53세($SD=8.76$, 20~59세)이

었다.

실험설계와 절차

본 연구는 추가납부 상황에 직면한 납세자가 사전에 납부나 환급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납세순응도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기대의 영향이 납세방법이 다른 직업군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지, 그리고 개인차 변인인 조절초점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인으로는 기대 여부(유, 무), 기대의 내용(환급, 납부)을 조작하였고, 직업(근로소득자, 자영업자)은 해당 직업을 가진 참가자가 해당 조건에 할당되도록 하였다. $2 \times 2 \times 2$ 로 모두 8개의 조건이 있었고, 각 조건에 맞게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조절초점은 개인차 변인으로 기존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유진협, 2001) 측정한 점수의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각 조건에서 상, 하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직업별로 분석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분석방법 참조).

시나리오 작성은 Schepanski와 Shearer(1995), Kirchler와 Maciejovsky(2001)의 연구에 기초하였고, 조건별 시나리오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시나리오는 우리나라 납세자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납세 상황으로 제시하였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총 현금자산을 제시해주고 환급 또는 납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환급이나 납부에 대한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로 5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제시하였고, 추가 납부를 하고 났을 때의 최종 자산이 동일하도록 현금자산과 환급/납부액을 조건에 따라 조정하였다. 반면 자영업자는 중간예납 금액을 제시하고 확정신고 시 납부나 환급을 기대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로 5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제시하였고 납부를 했을 경우 최종 납부액이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도록 예납금과 환급/납부액을 조건에 따라 조정하였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최종 현금자산, 자영업자의 경

표 1. 실험조건에 따른 현금자산 보유액, 예납금액, 납부액과 환급액

실험조건		직업	
기대 유무	기대 내용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무	납부	총 현금자산 500만원	500만원 예납
	환급	총 현금자산 400만원 기대하지 않은 환급 100만원	600만원 예납 기대하지 않은 환급 100만원
유	납부	총 현금자산 600만원 기대 납부액 100만원	400만원 예납 기대 납부액 100만원
	환급	총 현금자산 400만원 기대 환급액 100만원	600만원 예납 기대 환급액 100만원

우 최종 납부액을 동일하게 맞추어 최종 보유자산이나 납부액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각 조건에 따른 현금자산과 납부, 환급액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작성된 시나리오는 인터넷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인터넷으로 참가자들이 참여하여 응답하도록 하였고, 직업, 나이,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측정하는 질문을 먼저 하였다. 조건에 맞게 시나리오가 제시된 후 추가납부에 대한 순응도를 측정하였고, 그 외 관련 질문 4개를 추가로 하였다(납부 상황을 이득 또는 손실로 보는 정도, 세무 조사에 걸릴 확률,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추가납부액 50만원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기존 연구에서 세무조사에 걸릴 확률,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을 변화시켜 그에 따른 순응도의 차이를 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대의 유무와 내용에 따른 영향을 보기 위해 이 두 요인은 조작하지 않았고 대신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세무조사 확률과 응답자가 생각하는 가산금이 얼마나지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절초점을 측정하기 위해 17문항으로 이루어진 조절초점 측정도구에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자가 생각하는 세무조사 확률이나 가산금은 해당하는 확률이나 금액을 직접 적도록 하였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결과 예측과 분석 방법

결과 예측은 Schepanski와 Shearer(1995)가 제안한 방식을 따랐다. 먼저 조건에 따른 예상준거점을 보면 표 2와 같다. 기대가 없는 경우 현재 자산이나 기대 자산 모두 준거점은 0원이 되지만 기대가 있는 경우 현재 자산과 기대 자산의 준거점이 달라진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에 따르면(기대 무 납부 조건) 추가납부를 선택하면 50만원을 내게 되고 만약 납부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추가납부는 0원이 되지만 세무조사에 걸려(확률 p) 별금(-x)을 내게 될 수 있다. 별금의 기대금액이 50만원과 비슷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프로스펙트 이론에 기초하면 납부 상황에서는 납세자들이 위험을 추구하게 되므로 확실한 손실보다 불확실 하지만 아무 것도 잊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을 선

표 2. 실험조건에 따른 예상 준거점

실험조건		준거점	
기대 유무	기대 내용	현재 자산	기대 자산
무	납부	0원	0원
	환급	0원	0원
유	납부	0원	-100만원
	환급	0원	100만원

택하게 되므로 수식 (1)에서처럼 왼쪽 대안을 더 선호하게 된다(ν 는 프로스펙트 이론의 가치함수, π 는 결정가중치, $>$, $<$ 는 보다 선호되는 대안을 나타냄).

$$\begin{aligned} & \{\nu(-50\text{만원}/p), \pi(p); \nu(0), \pi(1-p)\} \\ & > \{\nu(-50\text{만원})\} \quad (1) \end{aligned}$$

반면 기대 무 환급 조건에서는 환급액 1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수식 2) 이득의 상황이므로 위험 회피적이 되어 오른쪽 대안을 보다 선호하게 된다. 즉 기존 연구에서 보고되는 것처럼 환급을 받는 경우 납세순응도가 높아진다. 수식 (1), (2)는 납부나 환급을 기대하는 경우에 현재 자산을 준거점으로 삼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현재 자산을 준거로 삼는 경우 기대의 유무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begin{aligned} & \{\nu(100\text{만원}-50\text{만원}/p), \pi(p); \nu(100\text{만원}), \pi(1-p)\} \\ & < \{\nu(50\text{만원})\} \quad (2) \end{aligned}$$

한편 기대가 있고 이러한 기대가 준거점에 반영이 되면 수식에 변화가 생긴다. 납부를 기대하는 경우 -100만원을 수식 (1)의 양쪽 항에서 빼게 되면 수식 (2)와 같아진다. 반면 환급을 기대해서 100만원을 수식 (2)의 양쪽 항에서 빼게 되면 수식 (1)과 같아진다. 그 결과 기대 자산을 준거점으로 삼는 경우 납부 상황에서는 확실한 대안을 선호하게 되고 환급 상황에서는 불확실

한 대안을 선호하게 되어 납부 상황의 납세 순응도가 환급 상황보다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예측을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 따르면, 현재 자산을 준거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대의 유무와 상관없이 납부 상황에서 보다 납세 순응도가 낮아지는 반면, 기대 자산을 준거점으로 사용하게 되면 기대 무 납부와 기대 유 환급 조건이 비슷하게 납세순응도가 낮아지고 기대 무 환급과 기대 유 납부 조건이 납세순응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본 결과의 분석은 먼저 2(기대의 유무)×2(기대의 내용: 납부, 환급)×2(직업: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변량분석을 실시한 후 각 직업 조건에서 개인차 변인인 성별과 조절초점을 넣어 추가분석을 하였다. 조절초점은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을 각각 고저로 나누어 2(기대의 유무)×2(기대의 내용: 납부, 환급)×2(향상초점: 고, 저)×2(예방초점: 고, 저)×2(성별: 남, 여)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조절초점과 성별의 영향은 각 직업군 내에서 분석하였다.

결 과

납세순응도

납세순응도를 종속변인으로 두고 2(직업)×2(기대유무)×2(기대내용) 변량분석을 한 결과, 직업의 주효과가 경계선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F(1, 392)=2.86, p=.09, n^2=.007$). 근로소득자의 평균

준거점	실험 조건			
	기대 무 납부	기대 무 환급	기대 유 납부	기대 유 환급
현재 자산				
기대 자산				

그림 1. 실험조건에 따른 예상되는 납세순응도(하얀 칸이 납세순응도가 높은 조건)

이 4.05($SD=1.97$)로 자영업자의 평균 3.73 ($SD=1.85$)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 유무와 기대 내용의 주효과는 없었고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고($F(1, 392)=7.54, p<.01, \eta^2=.019$), 세 변인의 삼원상호작용 또한 유의하였다($F(1, 392)=3.82, p=.05, \eta^2=.010$).

그림 2를 보면, 자영업자의 경우 기대 유무나 기대 내용에 따른 조건별 차이가 별로 없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조건별 평균 비교를 하면, 기대가 없는 경우 납부보다 환급조건에서 납세순응도가 높은 경향이 나타났고($p=.07$), 기대가 있는 경우 환급보다 납부조건에서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자의 경우 기대의 조작이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대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원천징수 현상이 나타난 반면, 기대가 있는 경우 기대 자산이 준거점으로 사용될 때 예측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 사람들의 기대가 준거점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상황지각 외 추가 질문에 대한 분석

납세순응도와 마찬가지로 추가 질문에 대해서도 2(직업)×2(기대유무)×2(기대내용)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상황을 어떻게 지각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분석한 결과 기대 유무와 기대 내용의 주효과가 각각 나타났다(기대 유무: $F(1, 392)=5.66, p<.05, \eta^2=.018$; 기대 내용: $F(1, 392)=14.12, p<.01, \eta^2=.035$). 기대가 없을 때 상황지각은 3.64($SE=.11$)이고 기대가 있을 때는 3.26($SE=.11$)로 기대가 없을 때 이득으로 보는 정도가 높았다. 기대 내용에 따라서는 납부일 때 3.15($SE=.11$), 환급일 때 3.75($SE=.11$)로 환급일 때 보다 이득 상황으로 지각하였다. 직업과 기대 내용의 이원상호작용도 유의하였다($F(1, 392)=9.42, p<.01, \eta^2=.023$). 이 상호작용의 양상은 그림 3을 보면 잘 나타난다. 자영업자의 경우 납부 3.47($SE=.16$), 환급 3.58($SE=.16$)로 기대 내용에 따른 차이가 없는 반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부 2.82($SE=.16$), 환급 3.91($SE=.16$)로 기대 내용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다($F(1, 392)=23.30, p<.01$).

다음으로 세무조사 받을 확률을 보면, 조건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근로소득자의 평균은 3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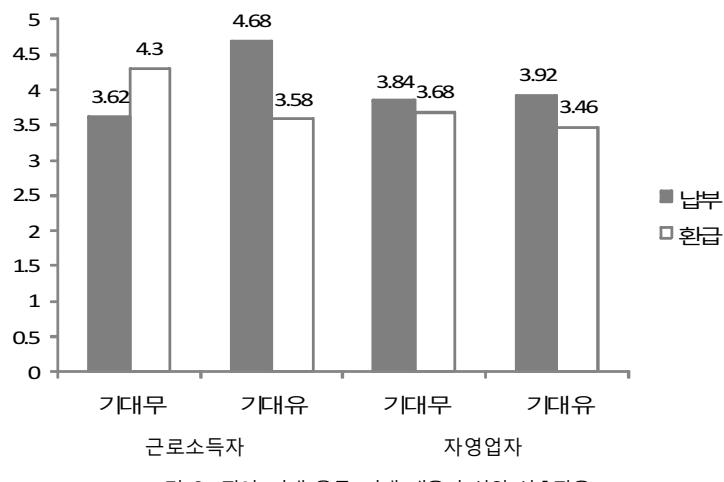


그림 2. 직업×기대 유무×기대 내용의 삼원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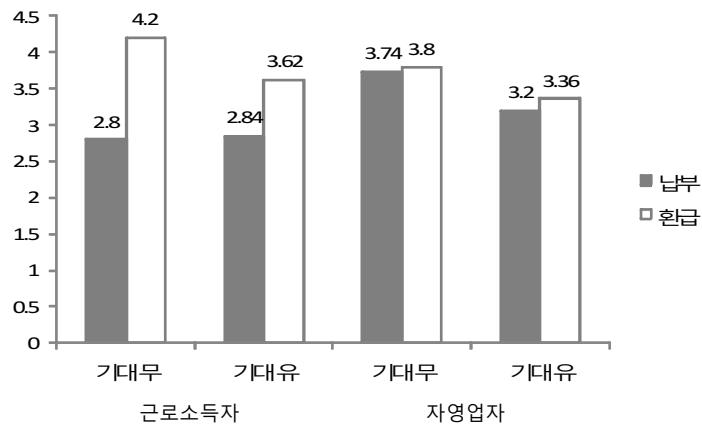


그림 3. 조건별 상황 지각(숫자가 커질수록 상황을 이득으로 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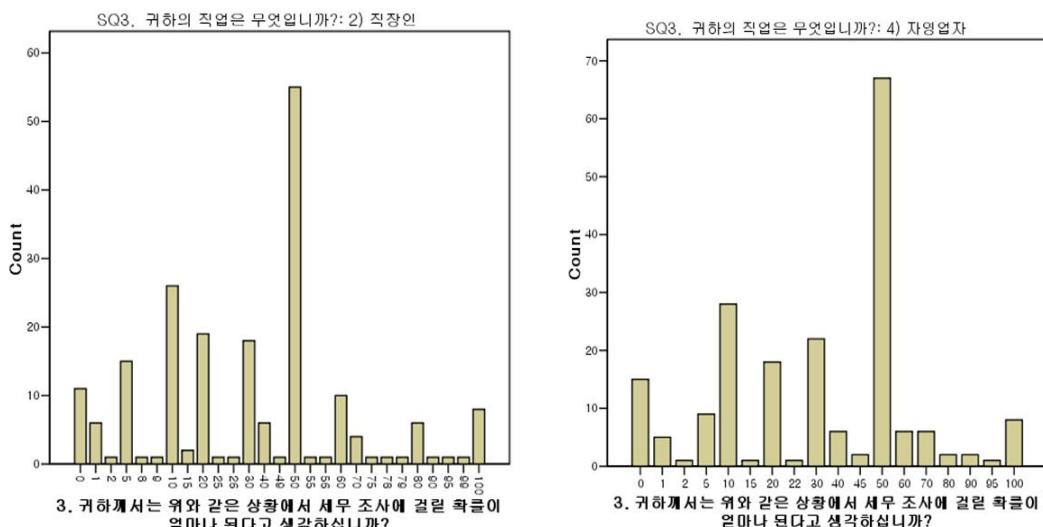


그림 4. 실험참가자들이 보고한 세무조사에 걸릴 확률(빈도)

($SD=26.99$)%이었고 자영업자의 평균은 35.42 ($SD=25.56$)%이었다. 세무조사 확률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결과는 그림 4에서 보듯이 50%의 빈도가 가장 크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보고한 확률이 자신들이 세무조사에 걸릴 객관적인 확률이라기보다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확률(걸리거나 걸리지 않거나)임을 보여준다. 50% 다음으로 빈도가 높았던 확률은 두 직업군에서 모두

10%이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세무조사에 걸릴 확률을 실제 세무조사 비율(1% 이내)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직업의 주효과가 나타났다($F(1, 392)=6.68, p<.05, \eta^2=.017$). 근로소득자의 평균은 296,550($SD=335427$)원이었고 자영업자의 평균은 393,050($SD=405606$)원으

로 자영업자가 생각하는 가산금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세무조사에 걸릴 확률과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을 곱하여 각 참가자의 기대가산금을 구하였고, 이를 공변인으로 두고 납세순응도를 종속변인으로 두어 변량분석을 하였다. 결과를 보면, 공변인이 유의하였고($F(1, 391)=17.28, p<.01, \eta^2=.042$), 나머지 결과는 공변인을 넣지 않은 결과와 비슷하였다. 기대가산금의 크기에 따라 납세순응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기 위해 추가분석을 한 결과 기대가산금이 커질수록 납세순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추가 납부액 50만원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를 보면, 주효과는 없었고 직업과 기대 내용의 상호작용이 있었다 ($F(1, 392)=3.77, p=.053, \eta^2=.010$). 자영업자의 경우 납부에 대한 평균이 5.85($SD=1.10$), 환급 평균이 5.96($SD=1.05$)로 기대 내용에 따른 부담감의 차이가 없는 반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부의 평균이 6.15($SD=1.13$), 환급의 평균이 5.81($SD=1.32$)로 기대 내용에 따른 부담감의 차이가 유의하였다($F(1, 392)=4.30, p<.05$).

성별, 조절초점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개인차 변인으로 성별과 조절초점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조절초점을 측정하는 17문항 중 향상초점과 관련된 9문항의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88, 예

방초점과 관련된 8문항의 내적신뢰도는 .83으로 나타났다. 조절초점은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의 전체 평균을 구한 후 전체 평균을 중심으로 8개 집단 내에서 고저를 구분하였다. 조절초점 구분 후 각 조건별 참가자 수는 표 3과 같다. 각 직업별로 2(기대의 유무)×2(기대의 내용: 납부, 환급)×2(향상초점: 고, 저)×2(예방초점: 고, 저)×2(성별: 남, 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변량분석 결과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대 유무×기대 내용의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하였고($F(1, 168)=11.47, p<.01, \eta^2=.064$), 기대 유무×기대 내용×향상초점의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F(1, 168)=4.90, p<.05, \eta^2=.028$). 이원상호작용의 양상은 앞서 보고된 것과 동일한 양상이고, 삼원상호작용의 양상은 그림 5에 제시하였다. 항상고에서는 기대 유무와 기대 내용의 기존 상호작용 양상이 그대로 나타나지만 향상 저에서는 기존의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영업자에서는 예방초점×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고($F(1, 168)=4.38, p<.05, \eta^2=.025$), 기대 내용×향상초점×예방초점×성별의 사원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F(1, 168)=10.21, p<.01, \eta^2=.057$). 남성의 경우 예방초점이 높은 경우 납세순응도가 더 높게 나타나 의무나 임무에 초점을 두는 예방초점의 영향과 일치되는 결과가 나왔다 ($p<.05$). 그러나 여성의 경우 예방초점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원상호작용의 양상을 보기 위해 기대 내용×향상초점×예방초점을

표 3. 조건별 참가자 수(%)

향상초점	예방초점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고	고	20(21.7)	24(26.1)	92(46.0)	33(29.5)	17(15.2)	112(56.0)		
	저	28(30.4)	20(21.7)		50(44.6)	12(10.7)			
저	고	28(25.9)	32(29.6)	108(54.0)	25(28.4)	16(18.2)	88(44.0)		
	저	26(24.1)	22(20.4)		32(36.4)	15(17.0)			
전체		102(51.0)	98(49.0)	200(100)	140(70%)	60(30%)	20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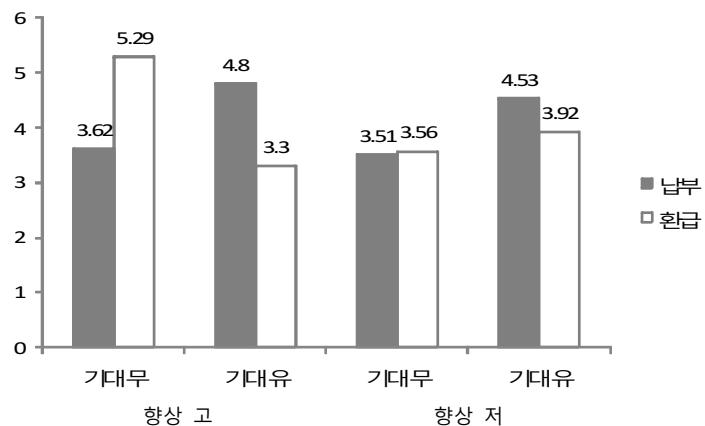


그림 5. 기대 유무×기대 내용×향상초점의 삼원상호작용: 근로소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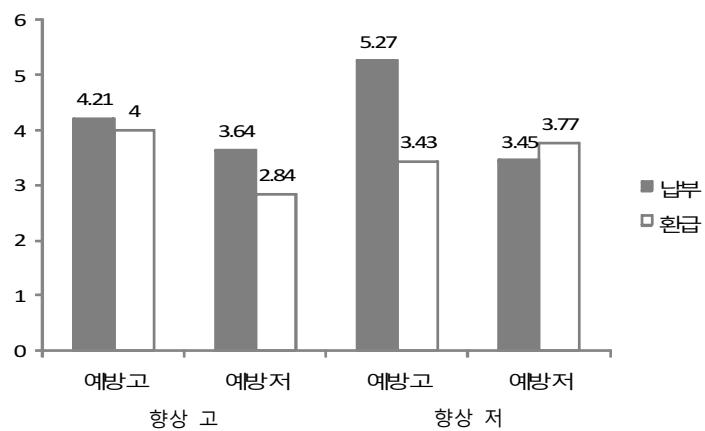


그림 6. 기대 내용×향상×예방의 삼원상호작용: 남성 자영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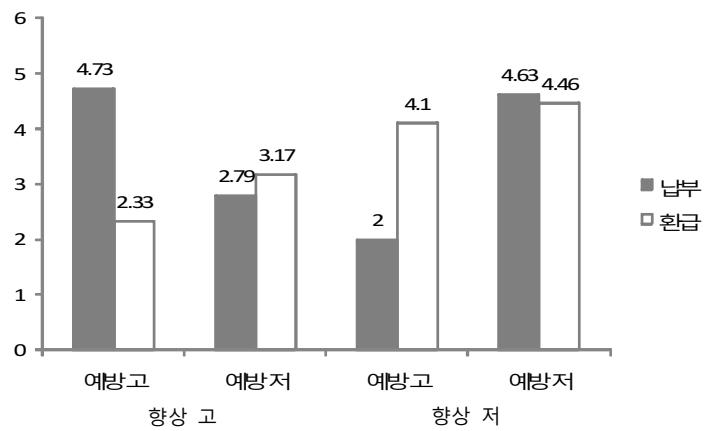


그림 7. 기대 내용×향상×예방의 삼원상호작용: 여성 자영업자

성별로 그림 6과 7에 제시하였다. 남성의 경우 향상 저/예방 고 집단에서만 납부와 환급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p<.05$). 이 집단은 예방 초점의 특징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는 집단이라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납세순응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납부를 기대하는 경우 납세순응도가 높았다. 여성의 경우 예방 저 집단에서는 납부와 환급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예방 고 집단에서는 향상초점 정도에 따라 납부와 환급에 따른 납세순응도의 차이가 반대로 나타났다. 즉 향상 고/예방 고에서는 납부 조건에서 납세순응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향상 저/예방 고에서는 환급일 때 납세순응도가 높게 나타났다(그림 7).

이상의 결과는 직업에 따라 성별, 조절초점의 영향이 달리 나타남을 보여주며 이러한 양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전반적으로 근로소득자는 향상초점이, 자영업자는 예방초점의 영향이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자영업자에게서 상호작용의 양상이 보다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조절초점이 직업과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 변량분석을 해보았는데 직업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향상초점의 경우 남자의 평균이 4.64($SD=.86$), 여자의 평균이 4.42($SD=.92$)로 남자가 유의하게 높았다($F(1,396)=3.86, p=.05, \eta^2=.010$). 반면 예방초점의 경우 여자의 평균이 5.25($SD=.80$), 남자의 평균이 4.95($SD=.77$)로 여자가 유의하게 높았다($F(1, 396)=13.14, p<.01, \eta^2=.032$).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성차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예, 남자는 보다 성취지향적이고 여자는 보다 조심스러운 행동이 요구됨)이 조절초점과도 부합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는 평상 시 세금을 내는 방식

에 따라 기대의 유무나 기대의 내용이 납세순응도에 달리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즉 세금이 근로지에서 원천징수되고 이후 개인의 공제 항목에 따라 납부를 더 하거나 환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부나 환급에 대한 기대의 유무나 그 내용에 따라 납세순응도가 달라지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이러한 조작이 납세순응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영업자의 경우 자신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예납하고 확정신고 시 당해연도 소득과 필요경비에 기초해 세금을 더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게 되는데, 본인의 신고에 따라 납세액이 달라지고 근로소득자에 비해서는 소득과 경비 지출에서의 변화가 더 빈번하고 크기 때문에 납세 전의 기대보다는 납세액 자체에 대한 평가가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자영업자들이 받은 시나리오는 조건에 따라 예납액과 이후 납부나 환급액이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납세액은 동일하였다. 실 납세액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납세순응도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검증과 자영업자들의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기대의 유무와 내용의 영향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Schepanski와 Shearer(1995)의 결과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현재 자산보다는 기대 자산을 준거점으로 사용함을 보여준다. 이는 매해 연말 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환급이나 납부에 대한 경험이 기대를 형성하고 이러한 기대가 준거점으로 반영되어 추가 납부에 대한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침을 잘 보여준다. Schepanski와 Shearer(1995)의 연구에서는 납세의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향후 자신이 직업을 가져 돈을 벌게 될 때의 상황을 가정하고 제시된 납세 시나리오에 응답을 하게 하였다. 반면 납세 경험이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기대 자산이 준거점으로 사용됨을 보여주고 있다(Copeland & Cuccia, 2002; Kirchler & Maciejovsky, 2001).

기존 연구들은 현재 자산이 준거점으로 사용되어 원천징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근거로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원천징수를 많이 하는 것(overwithholding)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기대 자산이 준거점으로 사용되어 원천징수 현상과는 반대로 환급 상황보다 납부 상황에서 오히려 납세순응도가 높아짐을 보여주므로 원천징수를 많이 하는 것이 항상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납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 납세순응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론적으로는 자신이 기대했던 납세액보다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손실로 지각된다. 실제로 상황을 이득/손실로 지각한 정도를 비교해보면 기대가 있는 경우 납부는 2.84, 환급은 3.62로 환급 상황을 더 이득으로 지각한다. 그러나 실제 납세행동은 손실을 지각할 때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스펙트 이론이나 심적 회계(mental accounting)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하나의 손실, 또는 여러 개의 손실을 동시에 통합하고 분리하는 것에 대한 주관적 가치 지각에 대해 언급하지 본 연구의 시나리오에서처럼 순차적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 이에 대한 손실 지각이 어떻게 일어나며 실제로 지불행동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다루지 않는다. 100만원을 납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50만원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 상황은 손실로 지각되지만 지불이라는 마음 갖춤새(mental set)가 이미 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지불이 보다 쉽게 결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가 반복적으로 얻어지는지에 대한 추후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반복적으로 얻어진다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결과에 대한 평가나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이 증가하여 과세표준이 바뀌는 경우 납세자에게 사

전에 통지하여 환급에 대한 기대보다는 추가 납부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연말 정산 후 나타날 수 있는 추가납부에 대한 납세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자신의 소득신고에 개인적 영향력이 적고 납세순응도도 높은 편이므로 근로소득자보다는 자영업자의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현실적으로 더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납세방식의 차이로 본 연구에서 조작한 변인들이 자영업자에게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들의 결과에 기초하면 납세 상황을 손실로 지각하기보다는 줄어든 이득으로 지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영업자의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일 될 것으로 보인다. 납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데는 납세에 대한 지식, 납세 태도가 영향을 미치므로 납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납세 자체가 국민의 의무이므로 납세라는 영역이 예방초점과 더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육이나 홍보 자료를 만들 때 메시지 구성을 예방초점에 맞추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으나 메시지를 수용하는 납세자의 조절초점에 따라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기대라는 인지적 요인이 납세순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결과를 해석하는 데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현실 상황에서 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가상적인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시나리오의 현실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납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모았지만 참가자들이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추가납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 알기 어렵다. 그리고 직업별 납세방식을 반영하여 시나

리오를 작성하다보니 시나리오 내용이 일부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직업에 따른 납세 순응도를 비교하여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제한적이다. 그리고 추가 납부액인 50만원에 대한 부담감에서 직업별 차이가 없기는 하였지만 직업군에 따라 소득수준이 다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이후 소득수준이나 세율의 변화에 따른 납세순응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경험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대하던 것에서 추가 납부가 제시되어 더 납부를 해야 하거나 덜 환급을 받는, 즉 기대했던 것과 결과가 다른 상황에서의 납세 순응도를 연구하였는데, 기대의 영향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기대와 일치하는 경우 납세순응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박명호, 전병힐, 조명환 (2011). 납세순응행위의 결정요인 분석: 실험적 접근.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11-07.
- 박주철, 이남우 (2003). 소득원천이 세율과 납세 순응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 연구. *세무학연구*, 20, 109-132.
- 박주철, 이남우 (2008). 과세공평성 지각이 납세 순응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9, 123-144.
- 유진협 (2001). 조절초점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조절변수로서의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찬웅 (1996). 납세자의 소득신고 수준결정에 관한 실험설 연구. *회계학연구*, 21, 19-44.
- 현진권, 박창균, 강병민 (2002). 실험자료를 사용한 납세순응행위의 실증분석. *세무학연구*, 18, 59-80.
- Allingham, M., G., & Sandmo, A. (1972). Income tax evasion: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 323-338.
- Alm, J. (1988). Uncertain tax policies, individual behavior, and welfare. *American Economic Review*, 78, 237-245.
- Baldry, J. C. (1987). Income tax evasion and the tax schedule: Some experimental results. *Public Finance*, 42, 357-383.
- Chang, O. H., Nichols, D. R., & Schultz, J. J. (1987). Taxpayer attitudes toward tax audit risk.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8, 299-309.
- Chang, O. H., & Schultz, J. J. (1990). The income tax withholding phenomenon: Evidence from TCMP data.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2, 88-93.
- Clotfelter, C. (1983). Tax evasion and tax rates: An analysis of individual return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5, 363-373.
- Copeland, P. V., & Cuccia, A. D. (2002). Multiple determinants of framing referents in tax reporting and compliance.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88, 499-526.
- Eriksen, K., & Fallan, L. (1996). Tax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s taxation; A report on a quasi-experimen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7, 387-402.
- Hasseldine, J., & Hite, P. A. (2003). Framing, gender, and tax complianc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4, 517-533.
- Higgins, E. T. (1997). Beyond pleasure and pain. *American Psychologist*, 52, 1280-1300.
- Higgins, E. T. (1998). Promotion and prevention: Regulatory focus as a motivational principle.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0, pp.1-46). New York: Academic Press.
- Holler, M., Hoelzl, E., Kirchler, E., Leder, S., & Mannetti, L. (2008). Framing of information on the use of public finances, regulatory fit of recipients and tax compliance. *Journal of Economic*

- Psychology*, 29, 597-611.
- Kahneman, D., & Tversky, A. (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47, 263-291.
- Kirchler, E., & Maciejovsky, B. (2001). Tax compliance within the context of gain and loss situations, expected and current asset position, and profession.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2, 173-194.
- Lewis, A., Carrera, S., Cullis, J., & Jones, P. (2009). Individual, cognitive and cultural differences in tax compliance: UK and Italy compared.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0, 431-445.
- Sandmo, A. (1981). Income tax evasion, labor supply, and the equity-efficiency tradeoff.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6, 265-288.
- Schepanski, A., & Shearer, T. (1995). A prospect theory account of the income tax withholding phenomen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63, 174-186.
- Simon, H. (1956). Rational choice and the structure of the environment. *Psychological Review*, 63, 129-138.
- Song, Y. D., & Yarbrough, T. E. (1978). Tax ethics and taxpayer attitudes: A surve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8, 442-452.

1차원고접수 : 2013. 02. 16.

수정원고접수 : 2013. 07. 01.

최종제재결정 : 2013. 07. 02.

〈Special Section〉

**The Effects of Expectation for Payment
or Refund on Tax Compliance:
Differences in Job, Sex, and Regulatory Focus**

Sowon Ah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pres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xpectation for payment or refund on reference points and tax compliance when people faced additional tax payment. In addition, it was examined if the effects of expectation were different according to jobs (the employed vs. the self-employed) and individual differences such as sex and regulatory focus affected tax compliance. Hypothetical scenarios were provided presenting additional payment situations with different manipulations of expectation and tax compliance was measured. The results showed that tax compliance was different depending on jobs. In case of the employed, when there was no expectation, tax compliance was higher in the refund condition than in the payment condition, replicating the withholding phenomenon. When there was expectation, however, tax compliance was higher in the payment condition than in the refund condition, suggesting that the expected asset position was used as reference points. In case of the self-employed, the manipulations of expectation did not affect tax compliance. When sex and regulatory focus were analyzed together in each job category, the employed were affected more by promotion focus, whereas the self-employed were affected more by prevention focus and the self-employed showed more complex interactions among sex, regulatory focus, and expectation. Finally,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tax compliance, expectation, reference point, regulatory focus

부 록: 조건별 시나리오

A.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시나리오

조건 1. 기대 무 납부

현재 당신의 총 현금자산은 500만원입니다. 당신에게 해당하는 공제사항이 반영되어 적절한 수준의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었으므로 연말정산 시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기대하였고 실제로 연말정산을 해보니 추가 납부나 환급 사항이 없어 다음 날 확정 신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미 공제 요청을 신청한 항목에 대한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수증이 없으면 50만원에 대한 공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는 50만원에 대한 공제를 제외한 후 신고를 하고 5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제를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 신고를 하더라도 세무 조사에 걸려 영수증 제출을 요구받지 않는 한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최종 신고 시 이 50만원에 대한 공제를 제외하고 50만원을 납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래 작성한 신고서를 그대로 확정 신고하시겠습니까?

조건 2. 기대 무 환급

현재 당신의 총 현금자산은 400만원입니다. 당신에게 해당하는 공제사항이 반영되어 적절한 수준의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었으므로 연말정산 시 추가로 더 부가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기대하였고 실제로 연말정산을 해보니 추가 납부나 환급 사항이 없어 다음 날 확정 신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해당되지 않던 공제항목이 당신에게도 적용 가능하여 1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제 요청을 신청한 다른 항목에 대한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수증이 없으면 50만원에 대한 공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는 50만원에 대한 공제를 제외한 후 신고를 하고 5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제를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 신고를 하더라도 세무 조사에 걸려 영수증 제출을 요구받지 않는 한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최종 신고 시 이 50만원에 대한 공제를 제외하고 50만원을 납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래 작성한 신고서를 그대로 확정 신고하시겠습니까?

조건 3. 기대 유 납부

현재 당신의 총 현금자산은 6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었으나 이전에는 적용되던 공제 사항이 더 이상 해당되지 않아 1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공제 요청을 신청한 다른 항목에 대한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수증이 없으면 50만원에 대한 공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는 50만원에 대한 공제를 제외한 후 신고를 하고 5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제를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 신고를 하더라도 세무 조사에 걸려 영수증 제출을 요구받지 않는 한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최종 신고 시 이 50만원에 대한 공제를 제외하고 50만원을 납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래 작성한 신고서를 그대로 확정 신고하시겠습니까?

조건 4. 기대 유 환급

현재 당신의 총 현금자산은 4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었으나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던 공제 사항이 당신에게도 해당되어 1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공제 요청을 신청한 항목에 대한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수증이 없으면 50만원에 대한 공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는 50만원에 대한 공제를 제외한 후 신고를 하고 5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제를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 신고를 하더라도 세무 조사에 걸려 영수증 제출을 요구받지 않는 한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최종 신고 시 이 50만원에 대한 공제를 제외하고 50만원을 납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래 작성한 신고서를 그대로 확정 신고하시겠습니까?

B. 자영업자의 경우

조건 5. 기대 무 납부

전년도 납부세액에 기초하여 당신은 총 500만원의 세금을 예납했습니다. 당년도 소득이 전년도와 크게 차이가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기대하였고 실제로 신고를 해보니 추가 납부나 환급은 없었고 다음 날 확정 신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미 공제 요청을 신청한 항목에 대한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수증이 없으면 50만원에 대한 공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는 50만원에 대한 공제를 제외한 후 신고를 하고 5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제를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 신고를 하더라도 세무 조사에 걸려 영수증 제출을 요구받지 않는 한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최종 신고 시 이 50만원에 대한 공제를 제외하고 50만원을 납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래 작성한 신고서를 그대로 확정 신고하시겠습니까?

조건 6. 기대 무 환급

전년도 납부세액에 기초해서 당신은 총 600만원의 세금을 예납했습니다. 당년도 소득이 전년도와 크게 차이가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기대하였고 실제로 신고를 해보니 추가 납부나 환급은 없었고 다음 날 확정 신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해당되지 않은 공제항목이 당신에게도 적용 가능하여 1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제 요청을 신청한 다른 항목에 대한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수증이 없으면 50만원에 대한 공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는 50만원에 대한 공제를 제외한 후 신고를 하고 5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제를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 신고를 하더라도 세무 조사에 걸려 영수증 제출을 요구받지 않는 한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최종 신고 시 이 50만원에 대한 공제를 제외하고 50만원을 납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래 작성한 신고서를 그대로 확정 신고하시겠습니까?

조건 7. 기대 유 납부

전년도 납부세액에 기초하여 당신은 총 400만원의 세금을 예납했습니다. 그런데 당년도 소득이 전년도보다 많아 1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공제 요청을 신청한 다른 항목에 대한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수증이 없으면 50만원에 대한 공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는 50만원에 대한 공제를 제외한 후 신고를 하고 5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제를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 신고를 하더라도 세무 조사에 걸려 영수증 제출을 요구받지 않는 한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최종 신고 시 이 50만원에 대한 공제를 제외하고 50만원을 납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래 작성한 신고서를 그대로 확정 신고하시겠습니까?

조건 8. 기대 유 환급

전년도 납부세액에 기초하여 당신은 총 600만원의 세금을 예납했습니다. 그런데 당년도 소득이 전년도보다 적어져 10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공제 요청을 신청한 항목에 대한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수증이 없으면 50만원에 대한 공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는 50만원에 대한 공제를 제외한 후 신고를 하고 5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제를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 신고를 하더라도 세무 조사에 걸려 영수증 제출을 요구받지 않는 한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최종 신고 시 이 50만원에 대한 공제를 제외하고 50만원을 납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래 작성한 신고서를 그대로 확정 신고하시겠습니까?